

〈2026학년도 1학기〉

「성범죄 이력 조회」 시행 공고

‘유아교육법 제22조의 2’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,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

1. 시행명: 「성범죄 이력 조회」

2. 시행 대상자: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

3. 시행 형태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

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

-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

: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

4. 개인정보 동의(2026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)

1) 동의기간: 2026년 6월 11일(목) ~ 7월 12일(일)

2) 신청방법:

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: 전산으로 동의 신청

※ 과거에 동의했지만,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

※ MYKNOU - 자격증 - 성범죄 이력 조회에서 동의

② 외국 국적을 가진자: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(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)

※ 관련 서류: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(첨부파일3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), 거소사실증명서, 거소증 복사본

5. 조회 결과 확인: 2026. 8. 5.(수) 이후

<참고> 성범죄 이력조회 신청 및 확인 안내

1. 신청절차

나의 정보-MYKNOU-자격증-성범죄 이력 조회

< 성범죄 이력 조회 >    29:29 

교원자격 무시형검정 자격증 소요학점 조회 교직 적성/인성 검사 L

본 동의는 2년간 유효하며, 이후 재동의가 필요합니다.

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[전자정부법]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 [성 범죄 이력 조회]는 「유아교육법 제22조의2」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유아교원들의 교사자격 취득의 결과사유 여부 결과를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형 검정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
이용기관 | 한국방송통신대학교

항목	수집·이용목적	보유기간
이름, 주민등록번호	이름, 주민등록번호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	법위결역(유무) 조회

*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[개인정보 보호법]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동의 동의 안 함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필수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[전자정부법]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혹사 연혁증 생양사 연혁증-국가기술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(간혹사 연혁증 생양사 연혁증-국가기술 자격증의 사본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[교원자격검정시험규칙] 제40조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필수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[유아교육법] 제 22조의 2 제2호-제3호 및 [초·중등교육법] 제 21조의2 제2호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동의 동의 안 함

전체 동의

확인

2. 재확인 화면

MYKNOU > 자재용 > 성범죄 이력 조회

성범죄 이력 조회

귀하는 2026년 06월 01일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성범죄 경력조회 사전동의 하셨습니다.

본인은 위 사유의 처리를 위하여 [전자정부법]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[참] 법치 이력 조회는 '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고2인원인 고사자적 취득의 경력사유 여부'를 결정할 고사자적 취득을 위한 무사질 증명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
이용기관 | 한국방송통신대학교

항목	수입·이용목적	보유기간
이름, 주민등록번호	이름, 주민등록번호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에 따라 고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	필수경력(유무) 조회

* 이불기관은 본인의 동의한 뒤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[개인정보 보호법]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연사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동의 동의 안 함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필수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[전자정부법]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접사 면허증-영양사 면허증-국가기술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(간접사 면허증-영양사 면허증-국가기술 자격증의 사본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[고민거버넌스시행규칙] 제50조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정책에 제호하는 경우면 해당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필수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[유아교육법] 제 22조의 2 제2호-제3호 및 [초, 중등교육법] 제 21조의2 제2호-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동의 동의 안 함

전체 동의

확인

- 전체 동의를 한 후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, **나의 정보 -MYKNOU-자격증-성범죄 이력조회 메뉴에 다시 들어가 팝업에서 확인 가능**
- 2년이 경과 되었거나,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
- 동의 안 할 경우에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안 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